

瑞山市生活保護基金設置條例廢止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2000. 11. 7
總務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0. 11. 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2000. 11. 4
- 라. 上程日字 : 2000. 11. 7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社會女性福祉課長 安光來)

가. 廢止理由

-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는 생활보호기금은 광역시·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
-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생활보호기금 잉여금을 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관리코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함
- 서산시생활보호기금잉여금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함 (안 부칙 제2항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생활보호기금은 광역시·도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에는 생활보호기금을 설치, 적립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며
-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해오던 잉여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0호
의결년월일	2000.11. . (제 회)

서산시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폐지 조례안

제출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0. 11. 1 .

서산시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폐지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8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	2000. 11. 3
제 출 자	서산시장

1. 폐지이유

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는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할 수 없음으로(98. 7. 28개정)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을 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관리코저함.

2. 주요골자

가.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함

나. 서산시생활보호기금 잉여금은 서산시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함(안 부칙 제2항)

3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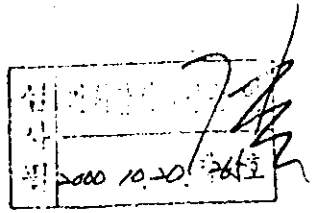
○ 관련법령

-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

서산시 조례 제 호



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생활보호기금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.